노무법인 로율

서울 마포구 만리재로14, 1802호 (공덕동, 르네상스타워)

Tel 010) 2890-7948, 02)713-2022 Fax 0303) 3444-2025

smilejhjh@hanmail.net

2026. 6. 29.

■ 제 목 : 달라지는 휴게 제도

■ 내용

’26. 12. 10.부로 시행 예정인 「근로기준법」 상 휴게 제도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.

■ 구 법상 휴게 제도의 문제점

「구 근로기준법(법률 제21784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)」에 따르면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,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해서 4시간 단위 휴가(이하 “반차”) 사용 시 인사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음.

■ 개정 후 휴게 제도

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,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이용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요청하면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정.

■ 개정 조문 신구대조표

개정 전	개정 후
근로기준법 제54조 (휴게)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,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. ② 〈생략〉	근로기준법 제54조 (휴게)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,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. 다만,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로서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이용하지 아니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② 〈생략〉

■ 유의사항 : 회사가 임의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수 없음.

본 휴게 제도 개정의 주된 목적은 “근로자의 휴게시간 선택권을 확대”하기 위한 것이므로, 4시간 근로한 근로자가 “명시적으로 요청”해야 비로소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음.

이와 달리, 근로시간이 4시간인 근로자가 “(휴게시간 미부여를)요청하지 않은 경우”에는 원칙에 따라 4시간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함.

■ 시사점

개정 법령이 시행되면,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오후 반차를 사용한 근로자(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상태에서 반차 사용)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근로자는 4시간 근로 후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않고 퇴근할 수 있음.

■ 참고 : 시간단위 연차 유급휴가

「근로기준법」 상 연차 유급휴가와 관련하여, 현재는 1일 단위로 시기지정권을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나, ’27. 6. 10.부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단위 및 일수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청구”할 수 있도록 개정될 예정임(법률 제21784호).

다만,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은 아직 개정된 바 없으므로, 이와 관련된 대통령령이 개정 · 시행될 때까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1일 단위(혹은 사용자 재량에 따라 그보다 작은 단위도 가능)로 시기지정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.